

講演

韓國電氣通信公社의 發足과 通信行政의 復元*

- 電氣通信觀의 刷新을 促求하며 -

學會長 趙 鼎 錡**

Jeong - Hyeon JHOW**, President of KICS

1. 序 言

오늘날, 電氣通信(Tele-Communication)이라는 多元的 社會現象(社會作用)은 國內外의으로 一大転換과 未曾有의 試練을 甘受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時点에 와 있다.

社會開發과 精神文化의 暢達을 위하여 格別한 觀心과 比重을 配分한 새政府는 電氣通信의 國家·社會的 所任을 새롭게 認識하고 오랫동안 懸案으로 罷 있던 官營公衆通信業을 公社化함으로써 合理的인 需給을 期하는 한편, 그 동안 企業偏重때문에 疎外되었거나 放置되었던 電氣通信에 관한 政策과 行政을 蘇生·補強할 施策을 推進하고 있어, 1982年 1月이면 그 実現이 予定되고 있다.

한편 世界平和와 人類福祉를 위하여 機能하는 「유엔」도 1960年以來, 國家間의 関係와 紐帶를 改善하는 電氣通信을 위하여, 人工衛星의 實用을 先行한 國際通信聯合(ITU)의 成功을 公開·致賀했을 뿐 아니라, 最近에 와서는 國際化的 役軍으로서 機能을 加速해 가는 電氣通信의 役割과 價值을 再評価한 나머지 UN과 그 拿下의 專門機構들이 앞을 다투어 通信機能의 集約的 収容을 敢行하고 세각기 政策的導入을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또 先進國들은 從來 分散的이고 附加的으로만 보아왔던 通信기능과 通信役割을 集大成, 하나의 뭍어진 社會作用으로 綜合함으

로써 政治·經濟·國防·外交 등 國家施策과 함께 平等한 隊列에 並存시키려는 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脱産業時代 또는 情報化時代를 앞두고 電氣通信이라는 社會 기능은 새로운 転機를 맞이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電氣通信』은 果然 무엇인가? 그쯤이야, 하기 쉬운 낱말이지만, 이 平易한 単語의 뜻이 電氣通信의 모든 原點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電氣通信』에 관한 概念과 認識 및 理解를 바르게 할 必要를 切感한다. 이 用語를 통한 電氣通信의 實體와 本質이 正確하게 把握된 다음이라야 이에 관한 論議가 可能하겠고 그러한 論理가 되어야 그 論議가 真實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일마동안 前近代的 通信觀 또는 似以非 電氣通信觀에 기초한 政策 및 規制를 受忍해 왔다는 것을 告白하지 않을 수 없다. 『電氣通信』을 『電氣와 通信의 混合으로』, 『物的 通信設備만으로』, 『工業의 一部로』, 『末梢神經에 不過한 것으로』, 『各種情報를 附加的인 것으로』 또는 『通信 主體인 專門人을 技能工으로』 혹은 『遞信部所任을 企業經營만으로』錯覺하거나 偏見한 「엘리트」에 의하여 敢行된 試行錯誤를 수없이 보아 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電氣通信의 本質과 科學 또는 그를 위한 原理에서 遊離된 政策 또는 偏狹的 通信觀에 依한 支配를 強要 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電氣通信에 관한 政策的 改革은 무엇보다 먼저 電氣通信觀의 科學的 刷新과 그에 基底한 理念과 姿勢를 새롭게 한 다음 試圖되지 않으면 아니되어 電氣通信이 受任하여야 할 役割과 所任을

* 1981年度 韓國通信学会 第5次 秋季学术세미나(1981년

10月 23日)의 主題発表論文임.

** 光云工科大学 電子通信工学科

Dept of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Kwang Woon University, Seoul, 132 Korea

資料番号: 81-1 (接受 1981. 9. 20)

로운 視角에서 合理的으로 追跡·綜合하여이 함께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國際機構나 先進국에서 檢索中의 制期의 電氣通信政策 또는 制度를 檢査, 國際化時代에 對應한 우리와 的 通信政策이 形成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이 研究는 먼저 電氣通信觀의 科学的 刷新과 그合理的概念의 把握을 위한 基礎作業으로서 電氣通信에 관한 意味와 原理를 통한範疇을 假設하고, 그동안 우리가 經驗한 電氣通信을 되돌아보면서 露出된 問題點을 中心으로若干의 論議를 시도한다. 다음, 公衆電氣通信業의 公社化와 電氣通信行政의 復元 및 再編成에 對하여 根本的인 所信을 提出하고자 한다.

研究方法으로는 電氣通信에 관한 内外 文獻과 事實을 土台로 筆者가 經驗한 바 電氣通信에 對한 実務, 教育 및 學問을 投入하는 한편, 関係者와의 面接에서 얻은 所信 및 意見을 素材로 삼으려 한다.

2. 電氣通信의 의미와 그 科学的 原理

1. 電氣通信의 의미

「電氣通信法」「電氣通信工事業法」「韓國電氣通信公社法」「國際電氣通信聯合」또는「國際電氣通信協約」등 表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電氣通信」이라는 単語는 法의이고 國際의인 通用語가 되었고 通信分野에서는 오래전부터 國內外의으로 常用하는 專門의 熟語가 되어 있다. 이 熟語의 原意는 電氣와 通信의 合成이 아니고 「電氣通信」即 「Tele-Communication」이라는 佛語가 「Tele-Communication」으로 英譯되고 다시 「電氣通信」으로 漢譯되어 우리나라가 法의으로 受容한 単語이다. 元來 Telecommunication의 原意는 相隔離遠方에서 授受하는 情報의 交換 또는 流通을 意味하는 作用 또는 過程을 뜻한 것으로서 漢譯過程에서는 「遠方通信」으로 直譯되어야 한다는 主張도 없지 않았다고 하니 結局 「電氣通信」으로 議決되었다.

그러므로 「電氣通信」은 電氣와 通信을 合成한 「Phrase」가 아니고 独特한 成句가 된 후 慣用語로 「Idiom」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Telecommunication」이라는 原語가 成句될 때의 背景에는 「Wire Communication」의 「Wire」와 「Wireless Communication」의 「Wireless」라는 表現을 모두 排除하기 위하여 「Tele」라는 接頭語를 採擇하게 되었다는 ITU小史가 있다. 1920년대를 前後하여 有線

通信과 無線通信이 서로 優劣에 對한 角逐을 勸하고 있던 때, 이兩者를 合併하기 위한 國際通信機構의 名稱을 採擇할 때 있어, 有線通信을 主導해온 佛國과 無線通信을 主導하고 있던 美國은 서로 自身의 主導權 通信의 優位性乃至는 代表性를 売執하는 慮意가 있어 「Wire」와 「Wireless」를 前置하려는 論爭이 오랫동안 거듭되어 왔다가, 甚而 1932年 「Wire」도 「Wireless」도 아닌 「Tele」로 前置하기로 妥決이 됨으로써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構成이 成就되었는 것이다.

그러므로 「電氣通信」은 「Telecommunication」을 東洋의 表記로 譯入한 것이며 「Telecommunication」은 有線通信과 無線通信의 合成을 意味한 것이다. 따라서 電流를 타고 流通하는 情報의 交換은 有線通信이고 空間을 伝播하는 電磁波(Electro-magnetic Wave)에 塔載되어 送受되는 情報의 流通은 無線通信이다. 最近에 와서 電子工學(Electronic) 및 光學(Optical) 등의 發達에 따라 通信技術에 急進的革新을 加해주고 있어 「電子通信」或는 「光通信」等 俗語(Fabrication)가 私用되고 있는 바, 公用語인 電氣通信에 混亂을 加하고 있을 뿐 아니라 通信界의 秩序와 体系에 畏지 않은 不條理와 非理를 惡起시키고 있다. Electronic이나 Optical의 開發 및 有效性 提高는 通信技術의 革新과 成長에 至大한 貢獻을 한 것이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通信方式의 改善・開發에 限定되는 것이므로 그 過度한 誇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企業膨脹을 위한 商的煽情을 理解못한 바 이니지마 教育 기관이나 公기관에 서까지 이러한 市情에 感触되는 일은 肯定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電氣通信職을 電氣과 通信의 混成으로 잘못錯覺하고 그에 관한 公務員制度를 处理한다면 그結果는 不問可知, 電氣通信職을 위한 것이 되어주지 못할 것은 너무도 明若觀火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電氣通信에서 그客体인 情報即 通信內容이 脱落되거나, 外面當하였다고 하면, 技術의 開發과 革新을 통하여 일어진 各種 媒體인 電流, 電波기타 電氣磁氣는 우리의 通信生活에 무수 도움이 되겠으며 이니에 充用할 것인가, 情報價值가 加增된 情報化時代를 맞이한 이時點에서 情報를 輕視하거나 看過한 나면 電氣通信은 무엇을 受任할 것이며 專用回線만 을 提供하고 있던 舊時代의 貨物業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또 電氣通信現象의 主體라고 볼 수 있는 專門職인 通信人力이 그의 職分인 電氣通信에 對

하여 主觀이 缺如되었거나 그 作用에 對한 主管意識이 懦弱하거나 未及하다고 하면 電氣通信의 要素인 設備와 情報는 分散·隔在할 뿐, 通信으로서 機能과 役割을 할 수가 없을 것이 分明하다.

結局 電氣通信이 鑄造된 理念과 原理에 符合된 電氣通信의 取扱 또는 規制가 되지 않으면 利用者에 對하여 充分한 實益을 주지 못할 뿐아니라 電氣通信에 관한 教育과 科學에 對하여도 바르고 참된 電氣通信을 伝授하지 못할 것이고 그 동안 投入된 錄과 시간과 努力은 虛事가 되고 말 것이다. 電氣通信에 對한 没理解와 無知는 그 教育과 科學의 不在 및 不實에서 由來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結果的으로는 電氣通信内部의 停滯와 非理를 自招하고 對外的으로는 自侮와 委縮을 감추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2. 電氣通信의 原理

電氣通信의 外向現象은 皮相의이 되기 쉽기 때문에 多元的일 수도 있고 恣意의으로 側向될 变數가 적지 않다. 그러나 電氣通信의 本質과 属性을 바르게 把握하기 위하여는 그 固有의 原理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通信을 「交信作用」 또는 「情報의 流通現象」 등으로 보고 電氣通信을 「現代的 对話」 또는 「近代의 意思流通」 등으로 보는 것은 外見的 機能觀에 不過한 것이다.

電氣通信의 原理에 對하여는 國際電氣通信憲章에 依據한 「電氣通信의 定義」를 근거로 그 本質과 属性을 導出할 수 밖에 없다.

이 定義에 의하면 「電氣通信이란, 有線·無線·光線 또는 기타 電氣磁氣的方法에 의한 모든 種類의 記号·信号·文言·影像·音響 또는 기타 情報의 모든 伝送·發射 또는 受信」이다.

協約原文에 의하면 「Telecommunication : Any transmission, emission or reception of signs, signals, writing, images and sounds or intelligence of any nature by wire, radio(wireless),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s」로 定義되고 있다. 이 定義는 ITU(國際電氣通信聯合)의 成立과 더불어 定立된 半永久的인 精髓(essense)이며 根原(principle)이다. 이 定義는 世界的 碩學의 知惠를 集約한 것이기 때문에 超國家的의 真理(truth)이며 本質(intrinsic)이다. 이 定義를 分解해 보면 電氣通信에 관한 構造原理, 機能原理 및 過程原理가 導出될 수 있다.

첫째, 構造原理로서, 電氣通信은 多樣한 情報가 주

어진 媒体를 통하여 各種 流通現象을 循環 反復하는 作用이기 때문에 電氣通信이 構成되기 위하여는 最小限, 情報, 媒体 및 流通作用이 그 要件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情報에 관한 것은 人文科學, 媒体에 관한 것은 工學, 相互의 流通作用은 社會科學의 属性을 채각기 内包하며, 必要에 따라 이 要素들은 有機的으로 相互結合을 하는 것이다.

둘째, 機能原理는 두 가지 側面에서 把握할 수 있다. 즉 하나는 内部의 伝送·發射·受信의 작용이지만 그 背後 또는 底邊에는 必히 人為의 意圖가 潛在할 것이고 또 이 作用은 相對性의 見現, 다시 말하면 通信價值라는 社會現象을 實現하는 것이 된다. 電氣通信의 構成要素의 情報와 媒体는 이 機能과 作用에 連繫됨으로서 비로소 通信作用의 要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萬一 伝達등 作用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들은 通信要素로서 相互接着이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通信作用인 通信가능은 電氣通信의 궁극의 目標로 載着이 된다.

또 한 가지 側面은 電氣通信의 内部의 기능이 電氣通信外로 擴散되면서 隣接기능과 結合·相乘함으로서 通信役割을 增大하고 通信價值를 提高하는 기능이다.

通信기능의 初步的 段階은 人為의 Factor와 기계의 Energy의 合成이지만 이것을 受容하는 利用者 또는 周邊領域은 社會의 기능으로 転移·變容, 그 기능을 效用하게 된다. 따라서 電氣通信밖에 out-put된 然後의 役割을 看過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 기능이 無限大해지고 있다.

셋째, 過程原理란 單位의 電氣通信 即 個別의 인 電報, 通話, Telex, Data 통신, Facsimile 등 通信役務가 取扱·處理되는 제 段階에 있어서의 原理를 말하는 것으로 接受·操作·制御·保管·検査·配付 등 取扱·處理되는 過程의 作業을 意味한다.

이 過程에 投入되는 각要素의 個性 또는 그 合成이 多岐多樣하기 때문에 이에 對應하는 多層性과 多元性(知識과 技術)이 収容되어야만 비로소 所期의 役務가 產出되고 또 供給이 可能한 것이다. 그러한 觀點에서 「通信科學」의 先唱者, Shannon와 Weaver의 通信系統의 모형은 通信過程의 原理를 適確하게 表現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以上 세 가지 原理에서 보여준 電氣通信의 個性乃至 特徵은 그것이 그 本質과 属性을 構成·機能·成就하기 위하여는 多分科의 知識과 技術 및 熟練을 必須要件으로 하는 것이다. 通信局의 象徵이며 縮小라고 볼 수 있는 無線局의 管理·運用者에 對한 国

國際協約上 資格要件을 보면, 語學·情報處理法·國內外法·通信技術 및 地理學등이 그 檢定對象이 되고 있어 人文·社會·工學의 지식 및 기술의 具備를 強要하고 있다. 이러한 原理는 國內外의으로 公認된 通信人力理論으로 定着되고 있다.

그러므로 通信人力에 關한 人事制度, 教育制度等은 이 國内外的 資格原理에 遵從하여야 할을 要한다.

3. 電氣通信業

1. 電氣通信의 範疇

電氣通信에 關한 原理, 나아가서는 그 科學을 基盤으로 派生, 發生, 發達 또는 開發한 것이 電氣通信에 關한 文化 또는 文明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文化나 文明이 制度化되거나 定形化된 것이 電氣通信業이다.

電氣通信業은 電氣通信의 原理에서 生れ본 바와 같이 그 構成要素, 機能과 役割 및 過程을 中心으로 需要者와 供給者 사이의 関係로서 形成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우에나 文化的要素와 文明의 要素의 結合이라는 特性을 本質로 한다. 다시 말하면 精神文化的 Factor(知情意等)가 物理的 Energy(電流電波等)에 塔載되어 意圖의 流通을 反復·循環하는 作用乃至 現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業에 關한 觀心度는 需要者인 利用者, 供給者인 取扱者 또는 第3者 或은 그들이 在內한 国家·社會에 따라서 差異와 輕重이 不可避할 것이지만 穩乏, 利害度, 文明度등에 따라서도 格差가 생길 것이며, 또 그 程度와 能力에 따라, 發展度가 決定지워질 것이다.

現代國家의近代化는 電氣通信의 發展에 比例하고 있지만 逆으로 電氣通信의 發展이 國家民族의高度化를 表示하는 尺度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電氣通信(業)의 範疇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電氣通信의 原理에 立脚하여 다음과 같은 試案을 提示할 수 있다.

첫째, 科學과 教育

電氣通信에 關한 科學과 教育은 모든 電氣通信의 源泉이며 原動力이라고 보기 때문에 先行的 課題이며 1次的 範疇라고 할 수 있다. 電氣通信科學은 最新의 統合科學이며 世界的 共通科學으로, 從來의 通信工學外에 関聯學問을 合成한 새로운 科學으로 育成·助成하여 鮮領域이다. 社會의高度化, 產業의 多樣化에 따라 電氣通信外 周邊領域의 科學과 教育은 새로운 勃興과高度化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秘書學, 觀光学, 記錄學, 環境學등의 新生과 看護學, 醫學, 教育학등의高度化 및 警察學, 稅務學등의

新設은 우리가 坐視만 할 수 없는 科學과 教育의 發展趨勢이다.

둘째, 電氣通信文化

電氣通信文化는 그것을 中心한 暢達과 振興을 통하여 加一層의 社會參與를 追究할 수 있고 새로운 領域을 定形화할 수 있다. 新聞·報道通信·放送 등의 醇化 및 高度化는 電氣通信의 文化領域이다. 한편 電氣通信을 통한 Education即 通信教育 및 放送教育은 電氣通信文化와 複合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 情報化社會에 臨하여 各種 情報의 源泉探索, 处理加工, 活用 및 反應·反射現象은 電氣通信文化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電氣通信文明(產業)

電氣通信文明(產業)은 電氣通信의 本質의 役務를 生產·供給하는 主軸의 正統業과 이에 附隨하여 派生·形成되는 附加業이 있다. 電氣通信文明을 現代的 產業概念에 마주해 보면 電氣通信은 1次~4次의 属性을 内包한 綜合產業으로 볼 수 있다. 即 1次는 그 資料인 情報源과 通信機材料의 發掘과 開發이고 2次는 通信機器의 製作이고, 3次는 機器의 設置工事와 專門人力에 의한 操作과 制御를 통한 各種 情報의 处理, 加工과 流通業(役務의 生產과 供給)이며 4次는 情報의 價値를 多樣化하고 高度화한 通信役務의 生產·分配業이다. 電氣通信에 있어서 主軸의 正統業은 3·4次業이고, 1·2次業은 附加業이다.

主軸의 正統業은 다시 公衆의 一般利用에 供與하기 위한 公衆通信業과 公共視聽에 供하기 위한 放送業이 있는 한편 多樣한 自營과 自用을 위한 非企業用自家通信業이 있다. 公衆通信業은 우리나라의 伝統的 通信主業으로서 從來, 官營, 獨占을 特徵으로 한 関係上 利點도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諸多不條理와 非理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國家的 次元에서 全國의 電氣通信의 發展에 消磨要因이 되었다는 点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電氣通信行政과 政策

現代是 行政國家化한다고 하는 点을 肯定하면 그行政化는 福祉國家化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있다.

伝統的 國家機能인 外務·內務·法務·財務等一般行政을 超越하여 現代國家即 教育·文化·產業·保健·厚生·勞使等 關聯하여 運輸, 通信等 各分野에 积極적으로 力動하여 国民의 福利增進을 助長하고 있다.

電氣通信을 通한 福祉增進外 國家·社會에 遷元되는 利便은 다른 어느 分野에도 뛰어는 바가 아님 것

으로 공인되고 있다. 電氣通信의 本質과 属性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電氣通信은 超空間的, 同時的, 相對的인 超國家的 現象이며, 電氣通信은 綜合科學과 高度의 專門人力을 基盤으로 形成되는 社會作用 이며 現代産業의 觸媒가 되는 近代的 綜合産業이며, 人間性 啓發을 위한 精神文化와 高度의 知識과 科學을 開発·誘引할 수 있는 現代文化이기 때문에, 이에 對応할 수 있는 가지가지의 國內外의 政策과 施政이 不可避하다. 對外的으로는 電波周波數의 共同管理와 共用, 宇宙通信用 衛星軌道의 共用등이 있고, 國內의으로는 通信科學의 振興 및 通信産業의 開発과 助成, 必要에 따라서는 國際的 次元에서 或은 國家的 次元에서 모든 電氣通信의 規制와 指導·育成 또는 誘發이 必需의이다.

2. 公衆電氣通信業

電氣通信文明(産業) 中 그 正統業의 系列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一般公衆의 利用에 供與할 수 있고 또 그 經營이 企業化된 것이 公衆電氣通信業 (以下 公衆通信業이라고 略한다)이다. 公衆通信業은 電氣通信 本來의 役務를 生產·供給하는 正統業이라는 点에서 非正統의 附帶業과 識別되어야 하지만 非公衆用 自家通信, 非企業用 自營通信 및 放送業과 區別지워져야 할 通信業이다.

우리나라의 公衆通信業은 19世紀末, 우리나라의 通信創業을 伝承, 그 官營과 独占을 堅持 通信主軸業으로서 功績이 至大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官營과 独占을 둘러싸고 派生한 逆效果도 적지 않았으니 自我反省과 더불어 試行錯誤의 排除를 위하여 다음에 그 大要를 持適해 보고자 한다.

첫째, 科學과 教育의 後退

1961年 通信政策「엘리아트」는 通信企業에 있어서 專門人力을 위하여 投入되는 正規教育의 投資는 企業의 浪費라고 斷定하고, 70년동안 천신만고끝에 겨우 構築된 正統의 通信 教育의 殿堂인 国立遞信學校 (當時 初大 및 高校課程)를 閉鎖해 버렸다. 그러나 이어서 莫大한 再教育·訓練費가 投入되었기 때문에 経費節減이라는 方面에서 実效는 거두어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 措置는 電氣通信에 관한 教育의 場을 抹殺함으로서 正規教育과 科學이 자리할 발판을 剝奪하고 말았다. 内部의으로는 一貫性이 堅持되는 專門人力과 高級人力의 輩出源을 막아버림으로서 도마도막으로 斷切되고相互 連携性이 없는 似以非 專門家와 無

緣한 客人的構造를 誘發하였으며 對外的으로 通信教育의 正統性을 壓失케 함과 同時に 教育의 또는 學問의 真否가 転倒되는 學境을 自招하였다. 結局 電氣通信内外에 그에 관한 教育과 學問 또는 研究가 발불하고 숨될 수 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通信의 自由와 民主化 泄止

8. 15後 民主化에 따라 通信의 自由가 擴大될 수 있는 体制乃至 世代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公衆通信業은 그 独占과 官營을 前題로 自家通信의 抑制와 그 運營의 規制 및 制限을 加重해 왔다.

이 事例는 國家的 次元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電氣通信 發展을 막아왔으며 特히 公衆通信外 通信의 成長을 商敵視한 傾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大規模 通信需要家 및 自由通信人の 通信觀을 菲曲해 왔다.

셋째, 収益性과 業績의 過剩追究

經濟成長과 外形의 業績이 誇示를 이루는 時代의 強要도 加勢하였지만 公益을 앞세운 国營体制를 上廻하는 収益性 追跡과 過度한 業績의 志向은 公衆通信業과 共存·並行하여야 하는 通信政策과 非公衆通信業인 自家通信 및 自由通信의 活性化乃至 跳躍을 封鎖한 것이 되고 말았다.

넷째, 政策과 行政의 空虛

通信政策과 通信行政을 受任하여야 할 國務委員이 政府職制上 嚴存하였음에도 不拘하고 한결같이 公衆通信業에 偏向, 그 企業의 総裁로 떠물고 있다가 물어가 버리는 分이 比較的 많았기 때문에 通信에 관한 高次元의 政策이나 國家行政이 着根할 餘地가 없었다.

다섯째, 通信觀의 不在乃至 凝結

電氣通信이 무엇이며 무엇하는 것이고 어떻게 需要에 對応하는 것인가, 程度는 電氣通信에 관한 初步的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意外로이 問題에 對한 可解者가 珍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通信에 관한 教育 및 科學의 不振以外에 通信人力에 對한 人事制度에서 1部 技術職을 除外하고는 그 專門性과 知識이 認定되는 職列, 職類가 外面되는 한편 無差別하게 生疏한 一般人을 投入하고 있는 制度上 不條理의 反作用이 아니겠는가. 職業公務員制度의 確立 또는 職務의 專門化를 指向하는 이 馬당에서 이와 逆行되는 낡은 制度를 受忍받고 있는 것 같다.

여섯째, 國際性의 未感과 缺如

電氣通信의 發端과 存在는 國際的 関係를 前提로

한다. 法制·技術·經營·科學등에서 唯我獨斷의 發想이나 措置는 禁物이다. 國際性 提高는 電氣通信의 存在와 價值의 必需的 先行要件이다.

일곱째, 公衆通信業의 先導性

公衆通信業은 그 伝統性이나 規模上는 役割에 있어서 國內外의 으로 他의 通信을 先導 或은 代表한다고 보아, 法制, 組織·經營에 있어서나, 그 施設 및 人力制度에 있어 他의 垂範이 되어야 한 豈 아니라 公益性 提高를 통한 國家, 社會의 受任이 莫重하기 때문에, 그 所任은 유감없이 遂行해 주어야 한 大任이 있다.

4. 韓國電氣通信公社의 發足과 通信行政의 復元

1. 韓國電氣通信公社의 發足

李朝末 創業된 우리 나라 電氣通信業은 官獨占의 形態를 固守해온으로서 8.15때까지 通信當局이 그 唯一無二한 業體이며 主管官이었다. 海·空用·無線局 등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遞信當局만이 直接 通信局을 設置·運用할 수 있었기 때문에 通信主管官의 對外的 規制對象은 오히려 特例視되었다. 从이니라 다시 말하면 通信主管官의 主務가 公衆通信業의 經營만으로서 是被定 것이다.

그러나 8.15解放과 더불어 電氣通信領域에도 自由와 民主化의 新風이 닥차와 通信分野에 擴大되고 그 特殊需要가 激增됨에 따라, 公衆通信業과 遞信部外 通信局이 急增되어 軍·官·公·私用 通信이 膨脹되었다. 여기서 公衆通信業과 非公衆通信業의 競合乃至는 共存이 짙트기 시작하였고 기타 多樣하게 派生, 擴大된 遞信部以外의 通信으로부터는 公衆通信業의 独占과 官營에 对하여 無形의 挑戰과 抵抗을 增強적으로 받아왔다.

여기서 公衆通信業은 正統性固守의 時代의 合理化라는 兩面의 葛藤을 蒜胎한채, 果敢한 通信政策이나 通信行政을 發掘, 展開하지 못하고 公衆通信業체로서 地位에 머무르면서 繞出하는 難題에 徒勞로 免하지 못하고 있었다.

1965年以來 遞信部는 이 問題解決의 焦点을 「公衆通信業」의 經營改善에 있다고 보고, 10餘次에 걸친 研究檢討를 通하여 드디어 1980年末, 官營으로부터 公社形態로 그 經營体制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公社化를前提한 問提点으로서 指摘된 大要是 첫째, 組織·人力·予算의 体制가 国家組織으로부터 自律性을 確保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官官組織으로

營業을 하고, 公務員의 身分과 報酬로서 所要人력을 確保하고, 國家予算制度로 企業을 經營한다는 것은 不適하기 때문에 公社化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施設의 激增에 따른 資金과 人力이 限界 point에 왔기 때문에 資金의 投入이나 業務의 負荷가 과度화되는 것이다. 세째는 高級人力, 頭腦人力의 確保가 公務員의 身分과 報酬로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从技術人力과 대불어 專門人力에 對한 人事制度上問題점인 것이다. 네째는 政策의 課題와 営業의 問題가 混沌되거나 交叉되며 営業의 比重이 過大하다는 것이다.

以上 問題점을前提로 指向된 改善을 위한 基本方向은 첫째, 國民生活에 必要不可缺한 通信役務는 公平하게 提供되어야 하기 때문에 公共性이 確保되어야 하며, 둘째, 生產性的 極大化와 収益者의 負擔原則에 立脚하여 企業性이 確保되어야 하며, 세째, 企業을 政策이나 行政과 分離, 專擔經營을 한다는 것이다. 韓國電氣通信公社法(1981.3.14. 法律第3385号)에 의하면 同公社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을 遂行함으로서 國民의 便益을 增進하고 公共福祉의 向上에 寄與하나니라」目的 附에 全額 政府投資 2兆 5千億 원으로 다음 業務를 行한다. ① 公衆電氣通信施設의 設置와 補修 및 運用 ② 公衆電氣通信에 관한 営業研究 및 實用化 ③ 所要人力의 養成 ④ 電氣通信用品의 試驗 ⑤ 기타 遞信部長官이 指定하는 業務

이 業務의 範圍에서 分明한 것은 公社는 公衆通信業을 專擔하는 特殊法人에 그친다는 것이며 모든 電氣通信을 管掌하거나 管轄하는 政策·行政·規制는 遞信部長官에 屬한다는 것이 明示되어 있다는 点이다. 따라서 從來 公衆通信企業이 同類業이나 同弊局인 周邊業이나 隣接局을 奉制하거나 規制하는 端은 解消될 것으로 期待되며 自由로운 通信의 發達이 促求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經營合理化를 거두고 發足하는 韓國電氣通信公社의 機構が 確定된 것으로 알려진 바 國내 最大的 法人體로서 그 偉容에 比例한 定礎와 發展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이 新設된 것으로 알려진 데이다 通信機構와 더불어 韓國電氣通信公社는 우리나라 電氣通信의 棚架이며 主軸으로서 電氣通信의 原理에 立脚한 새로운 電氣通信의 導火線이 될과 아울러 모든 電氣通信에 關한 文化와 文明의 觸媒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2. 通信行政의 復元

8. 15後 社會体制의 民主化에 따라, 우리나라 電氣通信에 對한 需要의 多樣화와 高度化는 公衆通信業을 超越한 国家的 次元의 行政支援 혹은 行政規制를 不可避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通信의 活性化가 公衆通信業에 依하여 变則的으로 抑制 또는 拒止를 받아왔다고 볼 때, 汎国家의 電氣通信의 發達이 그만큼 封鎖되고 延滯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觀點에서 今般 새로운 韓國電氣通信公社가 應分의 公衆通信業體로서 本然의 体制를 갖추고 새出發을 함과 同時に 国家기관안에 通信에 關한 政策과 行政이 蘦生케 됐다는 것은 汎国家의 電氣通信의 伸長과 國際化를 위하여 一大跳躍이 아닐 수 없다.

通信行政은 그 性格上, 伝統的 国家기능인 内務·外務·財務·法務 등 一般行政과는 달리 社會福祉를 指向하는 保健·厚生·建設·運輸·商工등과 함께 積極적인 社會行政에 屬한다.

그러나 通信行政도 国政인 以上 一般行政의 属性이 全面的으로 排除되는 것이 아니며 國權을 背景으로 公共政策을立案하고 그 政策을 執行·管理함으로써 그 具体化를 指向하는 国家的作用이라는 点에서는 다른 一般行政이나 社會行政과 同等의이고 同質의이다.

通信行政에서 独特한 点은 그 行政對象이 電氣通信에 關한 文化와 文明이며 그 行政主体가 電氣通信에 精通한 者 또는 電氣通信専門家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通信行政은 政府안에서 다른 行政과 共存·紐帶는 確保하여야 하지만 그 独自의 特性은 堅持되어야 한다. 이 特性이란 電氣通信의 原理를 基초로 한 科学性, 國際性, 同時性 등의 固有의 專門性이므로 그 对象의 選別 또는 그 行政主体의 資質과 資格의 規制는 이 独自의 專門性에 諸端되어야 한다. 從來, 行政對象을 自得自棄에 置重하였고 그 行政主体를 主体가 아닌 客体와 專門家로 転倒·混配한 誤謬는 깊히反省해야 할 것으로 본다.

通信行政의 对象을 넓게 잡으면 電氣通信에 關한 文化와 文明을 包括할 수 있다.

具體적으로는 ① 電氣通信에 關한 基本政策과 総合計劃 ② 総合產業으로서의 第1次(資料) 第2次(製造·加工) 第3次(用役供給) 및 第4次(情報化) 등 通信關係產業의 開發과 振興 ③ 情報化時代의 促進과 助成 ④ 國際化時代에 對應한 通信主管序으로서의 對內外的 地盤確立 ⑤ 通信科學의 振興과 通信

教育의 高度化 ⑥ 自家通信의 指導·育成 ⑦ 기타 電氣通信의 振興과 開發를 위한 모든 施策이 되겠다.

通信行政의 主体인 專門人力의 人事制度는 이 機会에 刷新이 切実하다.

政府가 職位의 專門化를 強化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通信行政이 一般行政이 아니기 때문에 別途 專門職列을 갖거나 既設된 通信職群에 通信管理職과 通信研究職을 新設, 追加함으로써 通信技術職과 共存하게 함이 合理的이고 実效的일 것이다. 모든 通信専門職이 同一職群에 共存함으로써 連帶意識을 鼓吹할 수 있는 人事管理上 利点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通信行政을 위한 政府機構는 마침 「작은 政府」를 指向하는 時点에 있기 때문에 言及하기 어려우나, 原則적으로 政策의 目標와 行政기능, 行政機能의 配分과 行政의 民主化라는 觀點에서 電氣通信에 關係되는 것을 보면, 通信政策과 電波管理에 關한 것은 이미 当為의인 것으로 受容된 것으로 보이나 그 위에 假稱, 通信產業 및 國際協力에 關한 部局이 追加되었으면 하는 所望이다. 綜合的性格의 通信產業을 振興·開發하는 国家的 施政과, 超國家的 通信의 本質에 立脚한 國際協力策은 國際化時代에 適한 우리의 地盤에서 国家的으로나 民族的으로 切実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別途 独立機構까지는 要하지 아니하드래도 通信科學의 振興과 通信教育의 高度化 및 電氣通信에 關한 研究의 深化는 持續的으로 土着될 수 있는 行政力이 加重해져야 할 것이다.

將後 通信行政의 方向을 定하는 通信政策은 높은 次元에서 審은 眼目으로捕捉이 되어야 할 것이다. 通信科學의 原理에 立脚하여 繼帶한 通信需要를 供給하고 激增하는 需給에 對應하는 것을 当面課題로 前題하지만, 長期的인 眼目에서는 通信技術의 發達, 通信機能의 総合과 統一 및 通信役割의 擴大와 擴散이 急進하는 趨勢에 있기 때문에 이에 뒤지지 아니하는 達觀과 先見이 기초가 된 政策의 模索과 集約이 이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5. 結　　言

時間과 素材의 制約때문에 充分한 分析과 接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懸案이었던 電氣通信에 關한 体制가 改革되는 転換機에 臨하여 바르고 새로운 電氣通信觀을 追跡·再確認함으로서 우리나라 電氣通信의 現代의 푸레임(Frame)과 世界的 피겨(Figure)

를促求해 본 것이다.

첫째는 電氣通信에 对한 科学的 理解를 위한 法理와 學理를 追究함으로써 通信觀의 刷新을 促求하였고, 둘째는 우리 周邊에서 捕捉·展開될 수 있다고 일어지는 電氣通信의 範疇를 想定했으며, 셋째는 그 범주속에 內在하면서도 特히 制度化되고 正統性을 堅持하는 公衆通信業을 專担하게 될 韓國電氣通信公社의 位置와 規模를 檢証한 바, 旧弊를 扱拭할 수 있을 것이고 새 企業体로서 새 經營像이 展望되며 그前途가 有望하다고 判断되었다. 넷째는 公衆通信業을 包含한 모든 電氣通信과, 世界를 向한 通信政策과 通信行政의 復元을 期約하여, 그 対象과 主體의 把握 등, 国家의 次元의 開發·振興·助成政策을 追跡·構想해 보았다.

結論的으로 우리 나라 電氣通信은 이 機会에 旧態依然한 前近代的 通信觀을 벗어나, 科学的論理에 기초한 最新의 通信 Pattern을 받아드려 世界的인 電氣通信觀으로 刷新을 斷行함으로써, 公衆通信業은 그 本質的 位置에 復帰, 本来의 召命에 忠実하는 한편 先導產業으로서의 正統性과 主軸性을十分發揮함으로써, 周邊產業의 觸媒的 所任을 兼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새로 復元되는 通信政策과 通信行政은 從來의 公衆通信業과의 癒着을 訣別하고, 国家의 次元에 서서 公衆通信을 包含한 모든 電氣通信을 同一하게 同等하게 統轄, 振興, 開發, 助成해 주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通信政策의 捕捉過程에서는 「情報의 自由」「産業的 要因」 및 「國際的 要因」 등 世界的 通信役割의 射程圈이 反影될 수 있는 達觀과 高見의 要請된다고 하겠다. 通信行政의 復元에 臨하여 急先務는 行政對象의 正確한 範疇화와 行政主体를 適格者로 選任할 수 있는 人事制度上 改善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参考文獻

1. 運信部, 國際電氣通信協約, 運信部, 1974.
2. 守住有信, 「電氣通信政策の課題と展望」ITUと日本 Vol. 10 No.11, 日本 ITU協会, 1980. 11
3. 浜山純一, 「國際化時代の電氣通信政策」ITUと日本 Vol. 11 No.7, 日本 ITU協会, 1981. 7
4. 柏木輝彦, 「電氣通信, 過去·未來」國際電信電話 4/1981, 日本 KDD, 1981. 4
5. 小糸忠吉 外 5名, 「サービス特集」國際電信電話 9/1981, 日本 KDD, 1981. 9
6. 日本 郵政省大臣官房 經營企劃課, 「1980年版 通信白書」電波時報 1/80, 電波振興会, 1981. 2
7. 朴東緒, 韓國行政論, 法文社, 1978.
8. 運信部, 運信事業經營体制検討, 1980. 12
9. 運信部, 通信部門 第5次 經済社会発展5個年計画案(1982-1986), 韓國開發院, 1981. 2
10. 運信部, 政策諮問委員会業務報告, 1981. 5
11. 運信部, 電氣通信公社発足後 運信行政 및 組織案, 1981. 8
12. 東亜日報社説, 半導体産業, 1981. 9. 14
13. 每日經濟新聞, 韓國電氣通信公社 機構確定, 1981. 9. 22
14. 朝鮮日報社説, 人間開発과 人間管理(企業發展은 人材育成에서) 1981. 9. 15
15. 朝鮮日報社説, 行政의 機能과 機構, 1981. 9. 16



趙鼎鉉(Jeong-Hyeon JHOW) 正会員
1918年9月22日生
1937年4月～1941年3月：遞信学校 電氣通信科 卒業
1953年4月～1957年3月：東亜大学校 法学科 卒業
1969年3月～1971年2月：建国大学校大 學院行政学科 硕士課程修了
1972年3月～1975年2月：建国大学校大 學院 法学科 博士課程修了(法学博士)
1937年12月～1961年6月：遞信部勤務(書記官)
1961年7月～1965年8月：韓國航空大學, 東國電子工科大學, 運信學校, 交通學校, ITU訓練所講師
1965年8月～現在：光云工科大學 電子通信工学科 教授,
光云工科大學 大學院長이며 本学会 会長.